

행정기관명

수신
(경유)

제목 매수대금 납부최고서

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하(귀 법인)가 매입한 아래 재산의 매수대금을 「지방세징수법」 제92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합니다. 아래의 납부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고, 귀하의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,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와 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.

매수인	성명 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 (영업소)			
체납자	성명 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 (영업소)			
매각재산의 표시				
납부할 금액		금 원(금 원)		
「지방세징수법」 제92조제4항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		년 월 일		
납부최고기한		년 월 일		

끝.

발신명 외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 구분